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제 호			
원료		[]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[]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	
심사 결과통지서			
상호 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	등록번호 (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) 또는 법인등록번호	
소재지			
성명			
심사항목			
분류	[]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[]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※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([] 색소 [] 보존제 [] 자외선차단제 [] 기타)		
성분명			
적합여부			
보완자료 (필요시)			
비 고			
「화장품법」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(변경)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(변경)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			